
윤리규범 실천규정

2024. 05. 1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규정'(이하 '실천규정')은 ㈜엠씨넥스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촉진하여 회사의 윤리적 가치를 구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운영

- ① 본 실천규정은 엠씨넥스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산하 투자회사(해외법인 포함) 및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도 준수를 권장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실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경우, 윤리현장과 실천규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행동해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본 실천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인지하면 각 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로 인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제3조.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회사의 제반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4조.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과 비용 등을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①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물을 무단 공개와 유출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승인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의 회사 정보통신 수단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회사 및 파견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 소프트웨어 등은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

- 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사적요구를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임직원과의 가족, 친구 또는 지인, 대리인을 통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②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에서 회사와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6조.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경영 활동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협력회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개인적 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 임직원 간 상호존중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기본 예의 및 품위를 지키며,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

제8조. 담합 행위 금지

- ① 임직원은 가격, 공급량, 거래조건, 업무 정보 교환 등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경쟁사와의 사업 정보 교류를 제한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 거래 지역 및 거래처 할당 등의 협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공정 경쟁 및 거래

- ① 임직원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윤리적 가치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4 장 법규 및 회사경영 방침의 준수

제10조. 경영 정보의 작성 및 보고

회계 정보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엠씨넥스의 임직원은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은폐, 과장, 축소, 지연 보고 등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엠씨넥스는 기업 활동, 재무 상태, 지배구조, 환경·사회적 성과 등 재무/비재무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품질방침 준수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품질 및 제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나 부품의 사용을 예방하여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12조. 환경안전보건방침 준수

- ① 엠씨넥스는 환경, 안전 및 보건 등과 관련한 법규와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③ 환경 관련 법규 및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 장 제보자 보호

제13조. 제보자 보호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제보 내용이 회사의 이익 또는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윤리경영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채널은 다음과 같다.

윤리경영 제보 채널

▶ 이메일 : esg@mcnex.com

▶ 전 화 : 070-8630-6804

▶ 팩 스 : 02-2025-3606

▶ 우 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39. 엠씨넥스타워 (주)엠씨넥스 ESG 경영팀

부 칙

1) 본 윤리규범 실천규정은 2024. 05. 13 부로 제정한다.